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⑧

결핵으로 진단되면 . . . (37 조 2)

★ 결핵이란

결핵은 결핵균을 들이쉬므로써 주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. 발병하더라도 가래 속에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경우는 타인에게 전염될 염려는 없습니다.

가래 속에 결핵균이 나오는 경우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튀어서 그 균을 주위 사람이 들이쉬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(만일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.)

결핵은 의사에 지시에 따라 약을 잘 복용하면 (통상 6 개월 이상)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.

★ 결핵 신고

결핵은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, 진단한 의사는 환자의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 및 직업등을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

의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정보와 본인 또 가족의 면담 등에 의해 증상과 생활상황 등을 청취합니다.

★ 입원권고와 접촉자 건강진단

보건소는 청취 결과 동거자 등에 결핵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결핵 환자로 판단된 경우는 결핵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[감염증법에 근거한 입원권고]를 실시합니다.

또한 보건소는 필요한 경우는 결핵에 감염된 우려가 있는 가족과 일상생활에서 접촉된 분에 대해 건강진단의 검진을 권고합니다.

(주)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분으로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[입원권고]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★ 의료비의 공비부담

결핵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의 일부를 공비로 부담하여 자기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(뒷면참조)

